

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 (제5조 관련)

구분	면허기준
도시철도차량의 대수	법 제6조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수립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대수 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대수
운영인력	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시철도차량의 종류·대수 및 운행계획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철도종사자를 보유할 것

비고 : 시·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 표의 도시철도차량의 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.